

신문방송국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문화의 창달과 건전한 학풍 조성,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교양을 위한 방송 및 대학신문 발간을 통하여 본교의 창학 정신과 교육이념을 선양하기 위해 설치한 예원예술대학교 부속 신문방송국(이하 “신문방송국”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

제2조(설치) 신문방송국은 예원예술대학교 내에 설치한다.

제3조(운영) 신문방송국은 방송국과 신문사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2장 방송국

제4조(명칭) 본 방송국은 예원방송국이라 칭한다. 호출부호(Call Sign)는 Y.U.B.S (Yewon Arts University Broadcasting System)이라 한다.

제5조(기능) 본 방송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교내방송을 통한 학생의 정서함양과 교양 증진
2. 교내방송을 통한 보도의 전달 및 올바른 비판의식 함양
3. 방송행사를 통한 지식과 교양의 보급
4. 자체연수를 통한 자질향상

제6조(사업) 본 방송국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규방송
2. 임시, 특별방송
3. 방송문화 행사
4. 기타 관련 사업

제7조(구성) 본 방송국은 주간교수, 운영위원, 정국원, 수습국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15.1.13>

제8조(지도교수) 주간교수는 방송국의 제반사항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결재권이 부여된다.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신문방송국장이 된다.<개정 2015.1.13>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지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다른 운영위원은 신문방송국장의 추천으로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방송국에 대한 전체 제반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방송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 질적 개선에 참여한다.

제9조의2(운영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임기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5.1.13>

제9조3(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방송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조신설 2015.1.13>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국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방송 주제 및 진행자 선정
4. 편집 및 편성 기획(안) 심의
5. 방송 평가
6.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4(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신문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조신설 2015.1.13>

1. 방송의 방향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0조(정국원) 정국원은 수습기간을 거친 자로서 방송국의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1조(수습국원) ① 수습국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 여 학생으로서 소정의 선발과정에 합격된 자로 한한다.

② 수습국원 평가는 면접으로 하고 면접 시에는 지도교수, 자문위원, 정국원 1인이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선발은 면접관의 평가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실무진 회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2조(정국원의 의무) ① 본 방송국의 정국원은 방송에 참여한 모든 활동 및 정관을 준수하고 시행세칙 및 본 방송국에서 의결된 일체의 사항에 따를 의무를 진다.

② 정국원은 자신의 능력을 정당하게 함양, 방송국의 명예를 지킬 의무를 진다.

제13조(실무진 구성) ① 본 방송국의 실무진은 실무국장과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실무국장은 본 방송국을 대표하여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주요 업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 지휘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본 방송국의 회의는 정국원 회의, 방송평가회의, 실무진회의, 사정회의 등을 둔다.

② 모든 회의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방송국의 모든 회의의 결정은 정국원에 한한다. 의장은 실무국장이 되며, 부재 시에는 기획부장이 주재하며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

④ 정기 국원회의는 방송활동 전반에 관한 토의와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⑤ 실무진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안건은 방송국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즉시 공고한다.

⑥ 사정회의는 정국원 선발을 목적으로 수습국원을 2차에 걸쳐 평가하여 정국원으로 임명한다.

제15조(실무국장) ① 본 방송국의 실무국장은 연속 4학기를 마친 자에 한하며,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며 본 방송국을 대표한다.

② 본 방송국의 실무국장은 정국원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방송국 운영에 반영한다.

③ 실무국장 선출은 정국원의 투표에 의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선출된 후보들에 대한 정국원 재투표로 선출한다.

④ 실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할 경우 기획부장이 대행한다.

⑤ 실무국장이 임기 중 실무국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탄핵할 수 있다.

제16조(부장) ① 본 방송국의 부장은 연속 4학기를 마친 자에 한하며, 본 방송국 각 부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단, 최종결정은 실무국장이 진다.

② 본 방송국의 부장은 각 부서 정국원의 의견을 수렴, 각 부서 운영에 반영한다.

③ 각 부서 부장의 선출은 각 부서 정국원의 의견을 수렴, 각 부서 운영에 반영한다.

④ 각 부서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하며, 3학년 1년으로 한다.

⑤ 각 부서 부장이 임기 중 부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탄핵할 수 있다. 최종결정은 실무국장이 한다.

제17조(재정) ① 일반예산은 본 방송국의 월별 운영비를 뜻하며, 운영비에는 사무운영비와 취재운영비를 분리한다.

② 특별예산은 행사예산(OPEN STUDIO, 가요제, 동·하계수련회, 동호인 체육대회, 방송제, 간부 수련

회, 행정소모품, 시방식, 종방식, 춘계 MT, 기타 등)을 뜻하며 실무국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인준을 받아 교학지원처에 제출, 지급받는다.

제18조(징계) 징계에는 사유서, 반성문, 시말서, 사직서, 재직 등이 있으며, 명시한 각 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실무국장은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징계내용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국장이 공고한다.

1. 사유서는 사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유서 3번은 반성문 1번과 같다.
2. 반성문 성격은 경고에 해당하며 본 방송국에 정관 및 시행세칙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징계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고 이를 시행치 않았을 경우에 시말서를 제출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각 부서 부장에게 조속히 연락을 취해야 하며, 반성문 3번은 시말서 1번과 같다.
3. 정국원 임원 중에 계속해서 3회 이상의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징계위원회 구성은 실무국장을 포함한 실무진 기수단으로 구성된다.

② 징계방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모든 징계행위는 징계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인원 4/5의 찬성으로 징계한다. 단, 정국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20조(임원에 대한 징계) ① 부장이 징계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부장을 제외한 정국원의 전원 출석에서 투표로 징계한다. 단, 정국원의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실무국장이 징계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실무국장을 제외한 정국원의 전원 출석에서 투표로 징계한다. 단, 정국원의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방송일수) 재학기 방송일 일수는 75일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2조(정기휴방) 본 방송국의 정기 휴방일은 하계, 동계휴가 기간 외에 다음과 같다.

1. 1차 정기휴방 : 1학기 중간고사 기간
2. 2차 정기휴방 : 1학기 기말고사 기간
3. 3차 정기휴방 : 2학기 중간고사 기간
4. 4차 정기휴방 :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제3장 예원신문사

제23조(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예원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라 한다.

제24조(업무) 신문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학신문(영자신문 포함) 발간
2. 신문 발간 및 학보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제25조(주간교수) ① 신문사에 주간교수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신문사 주간교수는 신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총괄한다.

제26조(언론지도사) ① 신문제작을 위하여 필요시 언론지도사(국문, 영문)를 둘 수 있으며, 언론지도사는 주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 언론지도사는 주간교수의 명을 받아 신문제작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27조(구성) ① 신문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신문편집국을 둔다.

② 신문편집국은 국장, 부장, 정기자, 수습기자로 구성하며 편집국장은 편집국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8조(신문편집국) ① 신문편집국은 학술부, 사회부, 여론부, 문화부, 해럴드부로 구성한다.

② 신문편집국에는 신문발간에 따른 취재 및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기자를 둘 수 있다.

③ 학생기자는 국장, 부장, 정기자, 수습기자로 구분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④ 편집국장과 부장은 정기자를 마친 3학년 중에서 임용하고 정기자는 수습기자를 마친 2학년 중에서 임용하며 수습기자는 1학년 중에서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하여 임명한다.

제29조(신문제작회의) ① 신문제작에 필요한 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매주 한차례 제작회의를 실시한다.

② 제작회의는 신문사 주간, 언론지도사, 정기자 이상의 학생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은 제작회의를 관장한다.

제30조(신문배포) 신문의 배포는 학보사 주간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31조(재정) 신문사 재정은 교비 및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예·결산) 신문사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신문방송국장이 된다.<개정 2015.1.13>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주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신문방송국장의 추천으로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신문사에 대한 전체 제반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신문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 질적 개선에 참여한다.

제34조(운영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임기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신문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3>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신문사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사설 주제 및 집필자 선정
4. 편집 및 편성 기획(안) 심의
5. 신문 평가
6.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신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의2(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신문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조신설 2015.1.13>

1. 신문의 논설 방향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보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6조(상벌) 학생기자의 포상과 징계는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7조(교칙 준수) 본 방송국은 교칙을 준수하며, 예원예술대학교 학생의 일반적인 권익과 명예를 존중한다.

제3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운영지침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규정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